#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48

발의연월일: 2024. 6. 24.

발 의 자:이용선・황 희・복기왕

이학영 • 주철현 • 오세희

양부남 • 박희승 • 임미애

김 윤 · 김성환 · 박지혜

박정현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권고를 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제도는 신·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보급확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거나 주민수용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일환으로 유휴부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영

노외주차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에 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3 신설).

#### 법률 제 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13(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영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해당 주차장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대상이 되는 공영주 차장은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범위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13(공영주차장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차대수 80대를 초과
	하는 규모의 공영주차장(「주
	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
	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지방자치
	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
	는 주차장을 말한다)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해당 주차장의 5
	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
	지 설비 설치의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은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u>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u>
	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범위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